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0.

발 의 자 : 최수진·박충권·김미애
구자근·김정재·김예지
성일종·김소희·배준영
강선영·박준태·서지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,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근로자가 고령의 부모에 대한 부양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직계존·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

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·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2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중 “연간 최장 90일”을 “연간 최장 18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3항(중전의 제10항) 중 “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”을 “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,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”으로 한다.

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·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 이 경우 유급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한다.

⑦ 국가는 제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직 또는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“가족돌봄휴직등 급여”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등

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.

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직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

제37조제2항제6호 중 “제22조의2제6항”을 “제22조의2제9항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.

제3조(가족돌봄휴직등 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신 설>

⑥ ~ ⑨ (생 략)

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직 또는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“가족돌봄휴직등 급여”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.

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직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

⑨ ~ ⑫ (현행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)

⑬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,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-----

제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에 처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(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)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
7. ~ 9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제39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략)

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8. (생략)

<신설>

9. (생략)

④ · ⑤ (생략)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22조의2제9항-----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8의2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
9. (현행과 같음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